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생순위별 지급금액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의견 조회 예정 (2024. 1월)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월) 예정,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의 “지급한다”를 “아래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첫째아는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2.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제1조의2 제6항의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조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

제3조(사용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등)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 등)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u>아래 각호와 같이</u> 지급한다. <u>1. 첫째아는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u> <u>2.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u> ② ~ ⑤ (생략)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 ⑤ (생략) (현행과 같음)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u>2년</u> 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이용권 지급에 관한 적용례)</u> <u>제1조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u> <u>제3조(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조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397